

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구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지체 없이	
양도인 (권리자)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		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(영업소)	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		
양수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		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(영업소)	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		
	지급계좌	금융회사	계좌번호	
세목	부과연월	과세번호	환급금 지급액	양도하려는 금액

위 양도인(권리자)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요구합니다.

요구자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위임장

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“위임받은 자”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.

위임자(양도인) (서명 또는 인)
위임받은 자(요구자) (서명 또는 인)

위임 받은 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위임자와의 관계
	주소	전화번호	

첨부서류	1.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: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.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: 법인인감증명서 3.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: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.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: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63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총당하고,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 처리됩니다.